

# 『2025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』 심사기준표

구분	평가 항목	배점	세부 내용		점수	비고	
수출실적	최근 3년 평균 수출액	10	'22 ~ '24년(3년간) 직·간접 평균 수출액	500만불 이상	10		
				100 ~ 500만불 미만	9		
				10 ~ 100만불 미만	8		
				10만불 미만	7		
진출지역 유망성	진출지역 중요도	10	전략시장(신남방/중동, 신북방/동북아 국가)		10		
			FTA체결국		7		
			그 외 기타 국가		5		
기업경쟁력	기업 기술력	10	지식재산권		5 (건당)	전문무역상사는 최고점(30점)으로 반영	
	제품 품질	20	국제품질 인증(서비스 포함) 국내품질 인증(서비스 포함)		10 (건당) 5 (건당)		
전시참가 기대성과	사업 신청서 작성 충실도	40	KOTRA 무역투자24 내 온라인 신청서 내용 작성 · 전시품 적합성/시장성 · 수출대상국 선정사유 · 전시회 참가비 적절성 · 마케팅활동 기대성과 · 전시회 및 수출 준비성	매우 우수	40		
				우수	30		
				보통	20		
				미흡	10		
				매우 미흡	0		
수혜 실적	최근 3년간('22~'24년) KOTRA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수혜 실적	5	0회		5	신규 지원기업의 참여기회 확대	
			1회		4		
			2회		3		
			3회 이상		2		
정책 호응도	전시회 사전 수요조사, 사업종료 6개월 후 실적 제출	5	2중 응답 또는 신규지원 기업		5		
			1중 응답		3		
			2중 모두 비협조		0		
가점	수출성과 인증	개별참가지원 사업 참여성과	+2	최근 3년 내 'KOTRA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' 참여를 통해 수출이 발생한 기업		2	정책우대 항목 최대 10점까지만 가점 반영
	정책우대	정부 정책 중요도	최대 +10	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인증기업		10	
				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 또는 내수기업 (참가 직전년도('24년) 수출실적 전무)		5	
				전문무역상사		5	
				스마트공장 구축기업,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		3	
				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		3	
				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		3	
				정부지정 수출 유망상품		3	
				유턴기업		2	
				전시마케팅 강화교육 참여기업		2	
				환율변동보험가입기업		2	
				뿌리기술 전문기업		2	
				신청전시회 신청/납부 증빙서류 제출기업		2	
사회적 경제기업		2					
집중호우 피해기업		2					
감점	사업 중도취소	-10	사업 중도포기 기업		10	2024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중도 취소기업	

# 제출서류 목록 및 평가방법 설명

---

## 1. 온라인 신청 시, 제출서류 목록

- ① (필수서류) 개별참가지원 사업 신청각서
- ② (필수서류)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③ (필수서류) 법인통장 사본
- ④ (보유시) 최근 3년('22년~'24년) 간접 또는 무체물 수출실적 증명서 사본
- ⑤ (보유시) 지식재산권/품질인증 등의 사본
- ⑥ (가산점) 정책적 우대\*를 입증할 인증서 사본
- ⑦ (가산점) 최근 3년 간 KOTRA 개별참가지원 사업을 참여하여 발생한 수출실적 증빙서류
- ⑧ (가산점) 지원받고자 하는 해외전시회의 임차료 인보이스와 은행 외화송금 전문 사본

## 2. 심사항목별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상세설명

### □ 수출실적 : 최근 3년('22년~'24년) 평균 수출액 (10점)

\* 2023년 이후 개업한 기업의 경우, 연 단위 평균 수출액 평가 예정

- 직접수출액 : 관세청 통계기준으로 평가,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
- 간접수출액 : 한국무역정보통신(KTNET)의 U-Trade Hub([www.utradehub.or.kr](http://www.utradehub.or.kr))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 시, 평가 반영
  - \* 최근 3년 외 발생 실적 불인정, 단순 은행거래내역·기업 내부 재무증빙·'LOCAL L/C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증명서' 등은 불인정
- 무체물수출액 :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용역/전자적 무체물 수출입 확인 증명서를 제출 시, 평가 반영
  - \* 최근 3년 외 외 발생 실적 불인정, 단순 은행거래내역 및 기업 내부 재무증빙 등은 불인정

□ 진출지역 유망성 (10점)

- 진출지역 중요도 : 사업 신청서에 작성한, 참가 예정 전시회의 국가(진출지역)에 대해 심사
- 신남방/중동 30개국(10점)
  - 서남아 : 인도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스리랑카
  - 중 동 : 아랍에미리트, 이집트, 이란, 이스라엘, 사우디아라비아, 요르단, 리비아, 모로코, 쿠웨이트, 오만, 이라크, 알제리, 시리아, 터키, 카타르
  - 동남아 : 베트남, 싱가포르, 필리핀, 태국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라오스, 호주, 뉴질랜드
- 신북방/동북아 16개국(10점)
  - CIS국가 : 러시아, 몰도바, 몽골, 벨라루스, 아르메니아, 아제르바이잔,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우크라이나, 조지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
  - 동북아 : 중국, 대만, 일본
- FTA 체·타결국 (7점) : 칠레, EFTA 4개국\*, EU 27개국\*, 페루, 미국, 캐나다, 중미 4개국\*, 영국, 콜롬비아
  - \* EU 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체코, 키프로스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웨덴, 불가리아, 루마니아, 크로아티아
  - \* EFTA : 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
  - \* 중미 : 니카라과,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

□ 기업 기술력 : 지식재산권 보유 및 기술 관련 수상 실적 (10점)

(건당 5점씩 최대 2건까지 반영)

- 지식재산권 :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등록증 등의 사본

인정	불인정
특허/실용신안/디자인등록증	특허/실용신안/디자인 출원사실증명원
특허/실용신안/디자인등록공보	특허/실용신안/디자인 출원번호통지서
특허/실용신안/디자인등록원부	특허/실용신안/디자인 등록결정서
-	그 외 특허/실용신안/디자인등록 '신청'에 관한 증빙
-	권리가 소멸된 특허증/실용신안등록증/디자인등록증
-	상표·서비스표·저작권 등록증

※ 기업명, 대표자명 확인 필요

※ 특허/실용신안/디자인에 대한 권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해야 함

- 그 외 기업기술력 인정 사항: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확인서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확인서, HIT 500 인증서 사본

※ 유효기간 만료 시 불인정

※ 비제조업기업의 경우 : 사업신청 전시회에 출품하는 제품 관련, 제조업체가 보유한 '지식재산권'과 '상품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대리점/권리 계약서' 등을 함께 제출 시, 사업 신청기업의 평가내용으로 반영

## □ 제품 품질 : 국내외 품질 인증 (20점)

(국내 품질인증 : 건당 5점, 최대 4건 반영)

(국제 품질인증 : 건당 10점, 최대 2건 반영)

- 국내 : 신기술 인증(NET), 신제품 인증(NEP), 싱글 PPM 품질인증서, 벤처기업 인증서, 수출유망중소기업·수출두드림기업·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, 우수산업디자인선정증(GD), 녹색인증(녹색기술·녹색기술제품·녹색전문기업·녹색사업인증), KOTRA 보증 브랜드, HACCP, GMP 인증서(식약청),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, 브랜드K 인증서,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(조달청), 세계일류상품 인증서(산업부) 등
- 국제 : UL, CE, ISO, CCC, CQC, FDA, FSSC, IATF, FCC, E11, MTIC, RoHS, OEKO-TEX, EC Certificate, EC Declaration, GRS, ETL, EFCI, IECEx, WLCA, PSE, VCCI 등 국제품질 인증서 사본

※ TEST REPORT, KS, Q마크 등은 불인정

※ 기업명 확인 가능해야 인정, 유효기간 만료시 불인정

※ **비제조업기업의 경우** : 사업신청 전시회에 출품하는 제품 관련, 제조업체가 보유한 '국내/외 품질 인증서'와 '상품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대리점/권리 계약서' 등을 함께 제출 시, 사업 신청기업의 평가내용으로 반영

## □ 전시참가 기대성과 : KOTRA 무역투자 24 내 온라인 신청서 작성 (40점)

- 매우우수 (40점) : 기재한 사업 신청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,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,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
- 우수 (30점) : 기재한 사업 신청서 내용이 일반적이고, 추상적인 해외마케팅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,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
- 보통 (20점) : 기재한 사업 신청서 내용이 추상적이고, 일반적인 해외마케팅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,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과가 다소 기대되는 경우
- 미흡 (10점) : 기재한 사업 신청서 내용이 미비하고, 해외마케팅 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전시회 참가 주요목표가 없어서,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
- 매우미흡 (0점) : 미작성 항목이 있거나, 상기 매우우수 / 우수 / 보통 / 미흡을 제외한 경우

## □ 수혜 실적 (5점)

- 사업신청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('22년~'24년) KOTRA 개별참가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횟수,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  
\*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[신규지원 기업]의 경우, 만점(5점) 적용

## □ 정책 호응도 (5점)

-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으로 수혜 받은 기업에 대해, 전시회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 및 해외전시회 사후 6개월 성과측정 조사의 응답 여부,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  
\*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[신규지원 기업]의 경우, 만점(5점) 적용

## □ 수출성과 입증 (+2점)

- 지원 사업 참여 후 수출성과 창출업체 (2점) : 최근 3년 이내 [KOTRA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]에 참여하여, 전시회 참가 후 수출의 발생유무 심사
  - ※ 최근 3년 내 사업 수혜 이력이 있어야 함 (참여이력 없을 시 0점)
  - ※ 실제 발생한 수출 건의 신고필증 + 증빙자료로 제출한 KOTRA 양식의 바이어 상담 내역서 제출 (하나라도 누락 시 0점)
  - ※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 신고일이 전시회 참가 이후의 날짜여야 함 (전시회 참가 이전의 수출신고 필증은 불인정)

## □ 정책적 우대 (최대 +10점)

-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인증기업 (+10점) :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인증서 사본
  - ※ 유효기간 만료 시 불인정
- 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 또는 내수기업 (+5점) : KOTRA 신규수출기업화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사업신청 직전년도(2024년)의 수출실적 "\$0"인 기업,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
- 전문무역상사 (+5점) :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에 직접 확인,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
-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(+3점) :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 직접 확인,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
-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(+3점) :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 확인,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
-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(+3점) :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승인공문 사본
- 정부지정 수출 유망상품 (+3점) : 산업부에서 고시한 30개 수출 유망 세부품목 확인
  - ※ <붙임> 4번 파일 참고
- 사회적경제기업 (+2점)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직접 확인,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
- 유턴기업 (+2점) : KOTRA Invest KOREA에 직접 확인,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
- 전시마케팅 강화교육(KOTRA, 전시산업진흥회) 이수기업 (+2점) : 교육이수 수료증 사본
  - ※ 최근 3년('22년~'24년)내 수료증만 인정, 기업당 1건까지 인정
- 환율변동보험가입기업 (+2점) : 보험증서(가입증) 사본
- 뿌리기술 전문기업 (+2점) :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직접 확인,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
- 신청전시회 부스예약 관련 증빙서류 제출기업 (+2점) : 사업신청서상 작성한 참가 예정 해외전시회의 ①부스 임차비 인보이스 ②부스임차비 결제내역\*
  - \* 송금 시 - 송금내역서 / 카드결제 시 - 카드결제 상세내역서(송금·수취인명 확인 필요)
  - ※ ①, ②중 하나라도 누락 시 0점
- 집중호우 피해기업 (+2점) :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제출, 피해사실 신고서 불인정